



제413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해자 등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거리 확대〉

■ 안규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983호)

2024. 2.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가해자 등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거리 확대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안규백 · 김진표 · 정일영 · 민병덕 · 서영교 · 김철민

우원식 · 이정문 · 김경만 · 윤후덕 · 김승원 의원(11인)

나. 발 의 일 : 2023. 9. 27.

다. 회 부 일 : 2023. 10.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중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는 성범죄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므로 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경찰의 평균 현장 출동 시간은 4분 16초이지만 현재 접근금지 거리로는 아동·청소년이 성인들에게 4분 16초 동안 도주할 수 없음. 특히, 20대 남성의 50미터 달리기 기록은 평균 7초이며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의 50미터 달리기 기록은 평균 11.4초임. 20대 남성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35초 이내에 추월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접근금지 거리를 800미터로 상향하여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 접근 시 경찰이 도착할 동안 도망칠 수 있는 거리를 확

보하기 위한 것임(안 제41조제3호).

Ⅲ. 검토의견

1. 가해자 등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거리 확대

개정안은 성범죄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피해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의 접근금지 거리를 100미터 이내에서 800미터 이내로 확대하려는 내용임(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41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제1호의 보호관찰과 함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 ----- ----- -----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	3. ----- -----

현행	개정안
터 <u>100미터</u>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4.·5. (생략)	~~---800미터-----~~ ----- ----- 4.·5.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판결로 선고할 수 있음.

이 때 접근금지 거리 100미터는 성인 남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짧은 거리로 접근금지 거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개정안은 거리를 100미터에서 800미터로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접근금지 조치는 현행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미적용 대상자에 대한 청구로서,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근거리로 접근할 시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접근 금지를 담보하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800미터는 가시거리로 보기 어려워 접근금지 조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을 수 있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판사가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¹⁾

가해자는 현행법 제41조 단서에 근거하여 본 법률상 접근금지 조치가 아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²⁾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

-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만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만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2)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별 최종심 선고형 종류 >

(단위: 명(%))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범죄 유형										계
	강간	유사 강간	강제 추행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착취물 제작 등	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영업	아동 복지법	
○징역형	370 (65.7)	82 (57.7)	257 (27.1)	8 (40.0)	29 (21.3)	174 (40.8)	17 (10.0)	29 (58.0)	53 (69.7)	36 (25.9)	1,055 (39.5)
-징역+ 전자감독+ 취업제한	25 (4.4)	5 (3.5)	28 (3.0)	0 (0.0)	0 (0.0)	6 (1.4)	0 (0.0)	1 (2.0)	0 (0.0)	0 (0.0)	65 (2.4)
○집행유예	193 (34.3)	60 (42.3)	557 (58.7)	12 (60.0)	77 (56.6)	252 (59.2)	135 (79.4)	18 (36.0)	21 (27.6)	72 (51.8)	1,397 (52.3)
-집행유예+ 취업제한+ 전자감독	0 (0.0)	0 (0.0)	2 (0.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0.1)
○벌금	0 (0.0)	0 (0.0)	127 (13.4)	0 (0.0)	29 (21.3)	0 (0.0)	18 (10.6)	3 (6.0)	2 (2.6)	31 (22.3)	210 (7.9)
○선고유예	0 (0.0)	0 (0.0)	6 (0.6)	0 (0.0)	1 (0.7)	0 (0.0)	0 (0.0)	0 (0.0)	0 (0.0)	0 (0.0)	7 (0.3)
○형의 면제	0 (0.0)	0 (0.0)	2 (0.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0.1)
계	563 (100.0)	142 (100.0)	949 (100.0)	20 (100.0)	136 (100.0)	426 (100.0)	170 (100.0)	50 (100.0)	76 (100.0)	139 (100.0)	2,671 (100.0)

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³⁾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의 가시성 여부와 무관하게 전자적으로 위치 확인 및 이동경로 탐지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금지 거리 확대를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여성가족부는 유사한 취지의 규정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에도 접근금지 거리가

자료: 가해자 조사표 분석결과(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 분석」, 202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별 전자감독 준수사항 유형별 부과 여부(1심 기준) >
(단위: 명(%))

준수사항 부과여부		범죄 유형			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계	부과	26(100.0)	5(100.0)	26(89.7)	6(100.0)
	미부과	0(0.0)	0(0.0)	3(10.3)	0(0.0)
	계	26(100.0)	5(100.0)	29(100.0)	6(100.0)
특정지역 및 장소 출입금지	부과	21(80.8)	5(100.0)	22(75.9)	4(66.7)
	미부과	5(19.2)	0(0.0)	7(24.1)	2(33.3)
피해자 등 접근금지	부과	1(3.8)	0(0.0)	7(24.1)	1(16.7)
	미부과	25(96.2)	5(100.0)	22(75.9)	5(83.3)

자료: 가해자 조사표 분석결과(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 분석」, 202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0m로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644